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정(안)



2014. 3. 19.

# 목 차



I 추진 배경

II 기본 방향

III 주요 내용

# I. 추진 배경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www.kcc.go.kr>



# I. 추진 배경

## 데이터의 폭증

일일 페이스북 데이터량  
약 10 테라바이트



'12년 전세계 데이터량  
약 2.8 제타바이트



월별 모바일 데이터량  
약 1.3 엑사바이트



일일 트위터 이용량  
약 5,000만건



초당 이메일 송수신량  
약 290만건



# I. 추진 배경

## 식별성 발생



# I. 추진 배경

## 개인정보의 범위 확장

### 개인 정보

168.172.1.\*\*\*

SNS 메시지

장바구니 상품목록

홍길동 820101-1...

서울시 송파구 ...

010-1234-...

\*\*은행 123-456...

모바일 정보

인터넷 쿠키

\*월\*일 \*시 접속

## II. 기본 방향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www.kcc.go.kr>



## II. 기본 방향

- ▶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 현행 법률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은 개인정보의 조합, 분석, 생성에 관련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제시
  - 사전 동의획득이 곤란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Opt-out 방식을 적용하고 수집 사실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III. 주요 내용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www.kcc.go.kr>



# III-1.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체계에 의해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정이유

- IT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의 수집·조합·분석 및 이용 가능 해짐에 따라 현행법의 해석·적용상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시

## III-2.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 [1/3]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1. “공개된 개인정보”란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예) 공개형 SNS 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 III-2.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 [2/3]

2. “이용내역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접속 정보파일, 거래기록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예) 인터넷 쿠키, 접속기기 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등

3. “정보 조합·분석·처리시스템”이란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체계에 의해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III-2.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2조 (정의) - [2/3]

4. “생성된 개인정보”란 정보 조합·분석·처리시스템 운용을 통해 생성된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예) 조합된 개인정보, 개인의 성향, 행태정보 등

5.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6. “재식별화”란 비식별화된 정보를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재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 III-3.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3조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 (1/3)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공개 대상을 제한하거나 공개 목적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정이유

-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공개한 목적에 대하여 동의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획득 불필요

## 가이드라인 제3조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 (2/3)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음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전자적 표시 방법 등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 연결된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가이드라인 제3조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 (3/3)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조합, 분석 또는 처리의 목적
3.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 제정이유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집 출처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

# III-4.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4조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 (1/4)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여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이용내역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가 이용내역정보의 수집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 ▶ 제정이유

- 이용내역정보가 발생하는 시점마다 동의를 받기 어렵고, 정보통신 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정보주체가 수집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Opt-out 방식 적용
- 정보주체는 이용내역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 III-4.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4조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 [2/4]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수집, 조합, 분석 또는 처리되는 사실 및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이용내역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음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전자적 표시 방법 등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 연결된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III-4.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4조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 (3/4)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조합, 분석 또는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이용내역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
- 거부권 행사 방법·절차(예시)
  - ※ 개인정보 취급방침상 이용내역정보 수집거부 페이지 링크 제공

## III-4.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4조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 [4/4]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검색프로그램 등에서 이용자 또는 검색프로그램등 공급자가 설정해 놓은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거부 선택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 제정이유

- 이용자는 인터넷브라우저 설정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의 이용 내역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브라우저의 Privacy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내역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

## III-5.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5조 (새로운 개인정보의 생성) - [1/2]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보 조합·분석·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가 새로운 개인정보의 생성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정이유

- 보유한 정보들을 조합·분석·처리하여 새로운 개인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기존의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의를 받기 위한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생성 거부권을 인정

## 가이드라인 제5조 (새로운 개인정보의 생성) - [2/2]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생성된다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개인정보의 생성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음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전자적 표시 방법 등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 연결된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가이드라인 제6조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조합·분석·처리) - (1/3)

- ①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이하 “공개된 개인정보등” 이라 한다)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정이유

-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조합·분석·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개인식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최소화

### 가이드라인 제6조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조합·분석·처리) - (2/3)

- ②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는 조합, 분석 또는 처리 과정에서 재식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식별화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비식별화된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조합·분석·처리 되는 과정에서 재식별이 가능할 수 있음
- 재식별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위험을 제거

## III-6.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6조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조합·분석·처리) - (3/3)

- ③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조합, 분석 또는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는 조합, 분석 또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정보를 조합·분석·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중간 생성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파기 또는 비식별화 조치 요구

## III-7.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7조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저장·관리) - [1/2]

- ①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저장·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 장치의 설치·운영
  2.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3.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 ▶ 제정이유

-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공개된 개인정보등은 조합·분석 등에 의해 향후 식별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적용

## III-7.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7조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저장·관리) - (2/2)

- ② 이용내역정보의 조합, 분석 또는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할 수 없다.

#### ▶ 제정이유

- 이용내역정보가 외부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유출·오남용의 위험이 증대하므로, 내부에서 정보를 조합·분석·처리토록 하여 외부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

## III-8.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8조 (민감정보 생성의 금지)

특정한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 정보등을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정이유

-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현저히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보다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전) 동의 없이 수집·이용 금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III-9.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9조 (통신 내용의 조합, 분석 또는 처리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송중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통신 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정이유

- 개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전송중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통신 내용을 조합, 분석 또는 처리 금지

# III-10.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10조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이용) - [1/2]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자신의 서비스 제공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정이유

-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 가능
- 정보주체가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이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음

## 가이드라인 제10조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이용) - [2/2]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이용된다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 제정이유

-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이용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음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전자적 표시 방법 등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 연결된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III-11.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제11조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제3자 제공] - [1/2]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제공받는 자
2.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항목
4. 공개된 개인정보등을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제정이유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사전] 동의없이 공개 및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

## 가이드라인 제11조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제3자 제공] - [2/2]

- ②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공개된 개인정보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제정이유

-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공개된 개인정보등은 식별성이 없으므로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음
- 그러나, 다른 정보와의 조합·분석 등에 의해 재식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공개된 개인정보등이 제공되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공개

## 가이드라인 제12조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 ▶ 제정이유

- 가이드라인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되는 개인정보 보호 법률과의 관계를 밝힘

감사합니다.

